

국토교통부공고(입법예고)제2024-1002호(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
정정)

관보 제20771호(2024.06.14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871호(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4년 07월 08일

국토교통부 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<u>2024년 7월 24일까지</u>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<u>2024년 7월 12일까지</u>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따른 정정